

## 01 정부실패의 요인 중,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2020 국회8급

- ① 비용과 수입의 분리
- ② 내부성
- ③ X-비효율
- ④ 파생적 외부효과
- ⑤ 분배적 불공평

**해설**

모두 정부실패 요인에 해당되나, 제시된 내용은 행정조직의 내부성(internality) 또는 관료의 사적 목표 설정과 관련된다.

• 행정조직의 내부성(internalities) - 조직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불일치(괴리·유리[遊離]·절연[緣縁]), 사적 목표의 설정 : 모든 조직은 내부의 일상적 관리 및 운영관련 활동수행 지침(SOP, 예산분배규칙)이 필요하다. 시장(민간부문)의 경우 소비자의 반응, 손익분기점, 시장점유율 등 분명한 경영성과 지표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정부부문의 경우 행정활동의 무형성·추상성으로 인해 구체적·객관적인 행동기준이 없으므로, 행정조직 스스로 지표(내부기준)를 개발하여 행동한다. 행정활동에 관한 목표나 기준설정시 사회적 목표(공익)보다는 관료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목표전환) 사회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목표의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행정조직의 내부성이라 한다. ⑦ 관료제국주의(Empire Building) : 관료들이 자기 부처의 예산(관료예산극대화가설)·인력·조직을 확대하려는 경향, ⑤ 권리의 원천인 정보의 획득과 통제에 의한 권력 확대 추구, 정보의 독점과 유용(流用), ⑥ 최신기술에의 집착 또는 새로운 기술도입에의 반발, ⑧ 법규나 절차 등 수단에 집착 등이 이에 해당된다.

- ① 비용과 수입(수익·산출)의 분리(괴리)로 인한 비용의 증복과 예산팽창 : 시장에서의 생산비용과 수입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정부부문의 활동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계 없이 부과되는 조세수입으로 이루어지므로, 비용의식이 낮아 예산 낭비 발생. 공공재 산출의 양과 질이 생산비용과 괴리되어 생산비용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흐리게 하여 정부는 총생산량만 늘리는데 주력하고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과잉생산 초래(서비스 공급비용의 채증). 비용과 수입 간 절연으로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공급기관을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거나 민영화가 필요.
- ③ X-비효율성 : 서비스 공급이 독점적인 경우 경쟁의 압력을 피할 수 있으나, 조직 내 경영자원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유인(誘因)을 잃게 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측면. 경쟁의 부재로 인한 관리 및 경영상의 비효율. X-비효율성이 나타나면 생산량은 줄고 가격은 인상되며, 사회의 후생순실을 초래.
- ④ 파생적 외부효과 :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정부개입이 초래하는 예기치 않은 비의도적 잠재적 효과나 부작용을 뜻함(예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정책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건축경기 과열화와 건축자재가격 인상, 건설비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서민주택난 가중). 정치인이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고위직 관료는 좀은 시계와 정책결정의 높은 시간활력을 때문에 파생적 외부성을 간과. 또한 정부산출물의 질과 양이 모두 정의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산출물이 넓게 되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동기가 위축됨. 파생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정부개입이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여 다시 정부 개입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이 순환적으로 작동하게 됨. 파생적 외부효과를 극복하려면 정책결정자의 장기적 사고방식이 중요.
- ⑤ 권력과 특혜에 따른 가치분배의 불평등(분배적 불공평 ; distributional inequality) - 권력의 편재(偏在) : 시장활동에서의 불공평 문제는 개인들의 소득과 부에 관한 것이지만, 정부정책으로 인한 불공평성은 권력과 특혜로 나타남. 즉, 정부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편익은 권력에의 접근가능성의 차이, 개인 소득의 차이, 기업규모의 차이, 지역의 차이에 따라 각 개인에게 서로 다르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정부활동 결과에 따라 득을 보는 사람(권력과 특혜를 부여받는 쪽)과 손해를 보는 사람(권력과 특혜를 박탈당하는 쪽)이 발생.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포획이나 지대추구 등 권리의 편재로 이어짐(예 그린벨트 내에 호화별장 건설허가, 상수원 근처에 골프장 건설허가).

답 ②

## 02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공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 받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 ②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주도한다고 본다.
- ③ 베만(Berman)의 적응적 집행이란 명확한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하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엘모어(Elmore)의 전방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과 정책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가정한 반면, 후방향적 접근법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한다.
- ⑤ 엘모어(Elmore)는 통합모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정책 설계단계에서는 하향적으로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정책 수단을 강구할 때에는 상향적 접근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 ① (x) 상향식 집행에 대한 설명이다. 하향식 집행의 경우 집행결과를 법적으로 명시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평가하므로 공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고 집행실적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 ② (x)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이다.
- ③ (x) ‘명확한 정책목표에 의거’라는 내용은 베만(P. Berman)의 정책집행 유형 중 정형적 집행의 특징이다.

## ■ 정형적 집행과 적응적 집행

구 분	정형적 집행(중앙통제적 전략)(programmed implementation)	적응적 집행(현지적응적 전략)(adaptive implementation)
의 미	비교적 명확한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사전에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집행	비교적 불명확한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다수참여자가 협상·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정·구체화하며 집행
정책상황	구조화된 상황 : 환경의 안정성이 높음 ① 정책목표·수단을 둘러싼 갈등이 적음 ⑤ 구체적 수단 선택을 위한 기준 이론·기술 확실 ⑥ 엄격하게 연결된 계층적 구조의 집행기관 ⑦ 정책이 요구하는 변화의 범위가 좁음	비구조화된 상황 : 환경의 불안정성 ① 정책목표·수단을 둘러싼 갈등이 심함 ⑤ 구체적 수단 선택을 위한 기준 이론·기술 불확실 ⑥ 느슨하게 연결된 비계층적 구조의 집행기관 ⑦ 정책이 요구하는 변화의 범위가 넓음
정책목표 수정필요성	정책목표를 둘러싼 갈등이 낮고 수립된 정책목표가 본질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므로, 정책목표 수정의 필요성이 적음	정책목표를 둘러싼 갈등이 심하고 당사자 간 협상·타협으로 정책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정책목표 수정의 필요성이 많음
관련자의 참여	성공적 집행은 설정된 목표를 집행자가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므로, 관련자의 참여 필요성이 낮음	집행과정에서의 문제해결 제고, 관련자의 동기부여, 능률적 집행을 위해 관련자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
집행자 재량	재량권 제한(재량권 증가는 목표달성을 차질 초래)	광범위한 재량권 필요(현지실정에 맞는 집행이 가능)
평가의 기능	집행의 충실도(fidelity)·성과를 측정, 수립된 정책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했는가가 평가의 기능	1차적으로 적절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변화에 대한 적응성) 점검하며, 성과의 측정은 2차적임.

④ (x) • 엘모어(R. Elmore)의 전방향적 접근과 후방향적 접근(1979) - 후방향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봄(Elmore는 이후 통합모형으로 전환)

전방향적 접근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정책집행단계를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집행성과를 원래 의도한 정책목표와 비교하는 연구방법(하향적 접근).	계층제 구조, 정치행정이 원론, 기술적 능률성 중시
후방향적 접근	최하위수준인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일선관료의 행태에 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다음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필요한 재량과 자원을 파악하고 집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 단위에 재량과 자원을 집중시킴. 일선관료의 지식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적절한 재량과 자원을 부여하는 것에 초점(상향적 접근).	정치성, 분권화와 민주성의 개념을 강조

전방향적 접근 :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에 대하여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며 집행 참여자의 구성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봄. 정책결정자들이 집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직적·정치적·기술적 과정을 통제한다고 봄.

후방향적 접근 : 정책결정자들이 집행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가정에서 벗어나 집행구조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일선집행관료의 행태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를 시작. 정책집행의 성공·실패의 판단기준은 정책결정자의 의도에 대한 순응 정도가 아니라 일선집행관료의 바람직한 행동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

제시된 지문은 언뜻 옳은 지문처럼 보이지만, '영향을 행사하고자 한다'라는 표현에서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있다. 전방향적 접근은 결정자가 실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하고, 후방향적 접근은 그렇지 못하다고 가정한다. 즉, 후방향적 접근에서도 정책결정자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겠지만 실제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며, 영향력 행사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는 것이다(후방향적 접근은 정책결정자의 집행과정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에 대해 당위적, 실재적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 따라서 틀린 지문으로 본다.

⑤ (O) • 엘모어(R. Elmore)의 통합모형(1985)

- ⑦ 전방향적 집행과 후방향적 집행으로 구분하고 상향적 집행인 후방향적 집행의 유용성을 주장하다가 이후에 양 접근이 상호가역적 논리(reversible logic)로 적절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
- ⑮ 정책결정자들이 정책프로그램 설계시 하향적 접근법에 의해 정책목표를 결정하되, 상향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

답 ⑤

### 03 정책평가과정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보다 정책의 효과가 과대평가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2020 국회8급

- ① 선정효과
- ② 회귀효과
- ③ 오염효과
- ④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
- ⑤ 대표효과

#### 해설

##### • 크리밍 효과(위광 효과, creaming effect)

- ⑦ 실험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그렇지 못한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정책수단을 실시한 결과 기대한 효과가 나타난 경우로, 다른 상황에 적용할 경우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외적 타당성 저해요인이 됨(선발효과와 호순효과의 상호작용).
- ⑮ 효과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 '상이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과 실험조작의 상호작용'과 모두 관련됨
- ⑯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비동질적으로 구성되므로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음.

답 ④

### 04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자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 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x)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③ (○)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④ (○)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 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자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는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 05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 직무일수록,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환경일수록 공식화가 높아진다.
- ② 조직구조의 구성요소 중 집권화란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 ③ 지나친 전문화는 조직구성원을 기계화하고 비인간화시키며, 조직구성원 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 ④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적응력은 떨어진다.
- ⑤ 유기적인 조직일수록 책임관계가 모호할 가능성이 크다.

## 해설

- ① (○)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인 공식성은 조직 내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 또는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대해 조직이 규칙·절차에 의존하는 정도이다. 단순하고 반복적 직무일수록 정형적 규칙에 의한 규율이 용이하므로 공식성이 높아진다. 조직규모가 클수록(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계층 수와 부하 수의 증가에 따른 통솔범위 확대로 직접감독 비용이 증가하므로 법령·규칙 등 공식화를 통한 통제가 효율적이다(간접적 감독 증가). 조직의 환경이 안정적일수록 환경변화에 신속적 대응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정형적 규칙에 의한 공식화가 높아진다.

## ■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와 상황변수

상황변수	규모(주로 구성원 수)		기술		환경	
	대규모	소규모	일상적	비일상적	확실	불확실
복잡성	분화의 정도(수직·수평적 분화, 공간적 분산)	↑	↓	↓	↑	↑(이전 있음)
공식성	표준화의 정도, 규칙·절차에의 의존도	↑	↓	↑	↓	↑
집권성	의사결정권·지휘감독권의 집중	↓	↑	↑	↓	↑

- ② (x) ↗ 복잡성 : 조직 내에 존재하는 활동이 분화되어 있는 정도(degree of differentiation).
- └ 집권성 : 의사결정권·지휘감독권이 어느 개인, 계층, 집단에 집중되거나 위임되어 있는 정도.
- ③ (○) 지나친 전문화(분업)은 개인 수준에서 직무의 단조로움과 낮은 중요성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을 기계화·비인간화할 수 있다. 또한 전문화에 의한 무능(훈련된 무능 : trained incapacity)에 따른 편협한 시각으로 인해 다른 분야와의 수평적 조정이 곤란해지는 문제(할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 ④ (○) 공식화란 업무의 표준화 정도이며,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형적인 규칙과 절차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조직의 경직성이 커지므로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인 적응력이 저하된다(공식화 수준은 조직변동률과 역의 상관관계).
- ⑤ (○) 유기적인 조직일수록 기계적 조직에 비하여 엄격한 분업이나 계층화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수평적·수직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②

## 06 베버(Weber)가 주장했던 이념형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lt;보기&gt;에서 모두 고르면?

2020 국회8급

- ㉠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문화된 법령이 조직 내 권위의 원천이 된다.
- ㉡ 엄격한 계서제에 따라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하여 법규를 적용한다.
- ㉢ 관료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 ㉣ 모든 직무수행과 의사전달은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는 것이다.

- ① ㉠, ㉡
- ④ ㉠, ㉢, ㉣, ㉤

- ② ㉡, ㉢
- ⑤ ㉡, ㉢, ㉣, ㉤

- ③ ㉠, ㉢, ㉣

## 해설

- ⑤ (○) 권위의 근거는 개인의 카리스마나 사회의 전통·관습이 아니라 법령이며 합법적·합리적 지배가 강조된다.

## ■ 지배의 유형(권위의 정당성 기준)과 관료제의 유형(형태)

지배의 유형	권위의 정당성 근거	관료제 유형	특징
카리스마적 지배	초인적 자질·능력에 대한 외경심	카리스마적 관료제	전통이나 법을 무시하고 개인의 초인적 자질을 바탕으로 자의적인 지배
전통적 지배	전통·신성함·마신	가산(家産) 관료제	전통·선례를 바탕으로 혈연에 의한 세습적 지배
합리적·합법적 지배	법규	근대관료제	법에 의한 지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지배

- ⑤ (x) 엄격한 계층제를 특징으로 하지만, 법규 적용에 있어서 상대방의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 ⑥ (O) 관료로서의 직업은 잠정적이 아닌 생애의 직업이자 전임직업으로 겸임은 금지되며, 직무수행 대가로 보수를 규칙적으로 지급받고(봉급의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지위·기능·근무연한이며 주로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한 연공급 지급), 실적과 연공에 의한 승진, 퇴직금 등 직업적 보상을 받으며, 직무에 전념하게 한다.
- ⑦ (O) 모든 직위의 업무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문서로 이루어지고 문서로 보관된다. 이러한 문서화는 업무의 지속성·계속성·안정성을 유지해주고 객관성·정확성·책임성·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 ⑧ (O)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고 권한은 사람이 아니라 직위에 부여되며(직위와 [행정수단] 소유의 분리, 직책의 사유화 불허) 권한 남용이나 임의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

답 ④

## 07 다음 내용 중 「정부조직법」 상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20 국회8급

- ①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 ③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다.
- ④ 각 부(部) 밑에 처(處)를 둔다.
- ⑤ 각 위원회 밑에 청(廳)을 둔다.

① ③, ⑤      ② ①, ②, ③      ③ ①, ②, ④      ④ ②, ③, ⑤      ⑤ ②, ④, ⑤

### 해설

⑤만 옳음.

- ① (O)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O) 행정각부 중 복수차관제 대상 : 기기외문교(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 ③ (O)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국무총리, 부총리, 각 부 장관이 이에 해당된다.
  -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 ④ (x) 처(處)는 국무총리 소속 4개(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와 대통령 소속 1개(대통령경호처)이다. 각 부(部) 소속의 처는 없다.
- ⑤ (x) 청(廳)은 행정각부 소속으로 둔다.

답 ②

## ▣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 중 일부 알아 둘 사항

### 1. 정부조직법에 다른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명칭과 근거 법률을 모두 명시.(2020.6.9.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설치 근거 법률에서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그러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중앙행정기관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정부조직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함. 따라서 정부조직법 상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은 현재 18부 5처 17청 5위원회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2020.8.5. 시행)되어 정부조직법 제2조 2항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추가하는 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추가될 경우 18부 5처 17청 6위원회가 됨).

종전 규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개정된 규정	<p>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li> <li>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li> <li>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li> <li>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li> <li>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6. 「신행경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li> <li>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li> </ol>

### 2.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삭제됨(2020.8.5. 시행).

•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掌한다.

2020.8.5.부터 개인정보보호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담당기구를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전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0.8.5. 시행)

## 08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 ②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④ 기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 ⑤ 계급별 정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부령으로 정한다.

### 해설

- ① (×)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다.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② (×) 기본운영규정 제정권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다. (☞ 국방홍보원의 경우 국방부장관(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국방홍보원장(소속책임운영기관장)이 기본운영규정을 제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기본운영규정)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 ③ (○) 동법 제7조(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임용)
-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② 기관장의 임용요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이하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라 한다)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 동법 제18조(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한다. 총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답 ③

### ▣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

구분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설치	중앙행정기관인 청(廳)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치
설치기관	52개	1개(특허청)
기관장	일반임기제(2~5년 내), 개방형 임용(중앙행정기관장이 공개모집)	정무직, 2년 임기 보장,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기관장책무	중앙행정기관 장이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 기본운영규정 제정.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
사업목표 설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표 부여.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국무총리가 사업목표 부여.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
직원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소속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며, 대통령령에 의해 임용권 일부를 소속책임운영기관장에게 위임 가능</li> <li>임용시험은 책임운영기관장이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책임운영기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행사</li> </ul>
정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함</li> <li>직급별 정원은 소속장관 승인을 얻어 기본운영규정에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원은 정부조직법 그 밖의 정부조직 관계법령(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의함</li> <li>직급별 정원은 자율적으로 직제시행규칙에 반영</li> </ul>
하부조직	기본운영규정으로 설치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시행규칙(총리령·부령)으로 설치
예산·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재정수입 전부나 일부 자체 확보)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에 속함)</li> <li>그 외는 일반회계(원칙),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기타 특별회계에 속함)</li> </ul>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초과수입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과수입금을 직·간접비용으로 자율적 사용 가능</li> <li>사용 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에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li> <li>10%를 초과하여 초과수입금 사용시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li> </ul>
평가·심의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중앙행정기관장 소속)</li> <li>-사업성과 평가,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중앙책임운영기관장 소속)</li> <li>-사업성과 평가,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li> </ul>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09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갈등은 해결과정에서 조직의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융통성 등이 향상되는 순기능도 있다.
- ② 갈등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 ③ 관계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④ 직무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자원 증대, 공식적 권한을 가진 상사의 명령 및 중재, 그리고 상호타협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⑤ 과정갈등은 상호 의사소통 증진이나 조직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해설**

- ①② (O)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옳은 설명임.  
 ③⑤ (O), ④ (△)

**▣ 갈등발생 방식에 따른 갈등 유형 구분**

유형	갈등 발생 방식	갈등 해결 방안
직무(업무·과업)갈등 (task conflict)	직무(과업)의 내용과 목표에 관한 갈등 과업과 관련된 관점, 아이디어, 의견 등의 불일치	상위목표의 제시, 공식적 권한을 가진 상사의 명령 및 중재, 상호타협
관계갈등 (relationship conflict)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적 관계(대인관계)에서의 감정적 갈등 개인 간 성격·가치·태도의 차이로 인한 불일치.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OD), 의사전달의 장애 요소 제거, 직원 간 소통의 기회 제공 등
과정갈등 (process conflict)	직무(과업)가 완수되는 방법에 관한 갈등. 직무 책임과 자원의 할당(누가 무슨 일을 맡고 책임져야 하는가? 어떤 부문에 어느 정도의 자원이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	상호 의사소통 증진, 조직구조의 변경, 자원의 증대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갈등은 경계가 불분명하며 과정갈등을 직무갈등의 하위 구성요소로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원 할당(resource allocation)에 대한 갈등을 직무갈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과정갈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Task conflicts are disagreements about the content of a task and work goals, such as distribution of resources, procedures, and interpretation of facts.(K. A. Jehn, 1997).
- Process conflict concerns issues such as resource allocation, task responsibility, and task execution.(Jehn & Mannix, 2001)
- Process conflict is around the delegation of responsibilities and resource allocations. (De Dreu & Weingart, 2003.)

외국 학자들의 최근 견해들은 과정갈등을 직무갈등과 구별하고, 자원 할당에 대한 갈등을 과정갈등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로 보이며, 출제자는 ④번 내용 중 '조직의 자원 증대'를 과정갈등 해결 방안으로 보고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답 ④

## 10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는 모형으로 옳은 것은?

2020 국회8급

이 모형은 한 조직, 특히 공공조직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조직문화를 단일 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갖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중 차원적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 이모형에 따르면, 조직문화의 유형은 두 가지 차원, 즉 내부 대 외부, 그리고 통제성 대 유연성을 기준으로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내부과정모형, 그리고 합리적 목표모형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 ① 조직문화장조모형
- ② 갈등·협상모형
- ③ 혼합주사모형
- ④ 경쟁가치모형
- ⑤ 하위정부모형

**해설**

E. Quinn & R. Kimberly의 「조직문화의 경쟁적 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에 대한 내용이다. 경쟁적 가치모형은 조직의 효과성 모형과 관련하여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으나 최근 조직문화의 유형과 관련되어 출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위 문제는 모형 명칭만 묻는 단순한 문제였지만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답 ④

**※ 조직문화의 경쟁적 가치접근(Competing Value Model) - E. Quinn & R. Kimberly**

신축성[유연성]·변화·분권화, 차별화(다양성)		혁신지향 문화 / 발전문화(development culture) (개방체계 모형)		외부지향 (차별·경쟁)
내부지향 (통합·단합)	관계지향 문화 / 집단문화(clan culture) (인간관계모형)	위계지향 문화 / 위계문화(hierarchy culture) (내부과정 모형)	과업지향 문화 / 합리문화(rational culture) (합리적 목표 모형)	
통제 및 질서·안정 - 집권화, 집중화(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직 축(구조) : 유연성 지향의 가치는 분권화의 다양성(차별화)을 강조, 통제지향 가치는 집권화와 통합(집중화)을 강조하는데, 이는 조직의 유기적 특성과 기계적 특성의 구분을 의미함.</li> <li>• 수평 축(초점) : 내부지향성은 조직 유지를 위한 조정·통합 강조. 외부지향성은 조직 환경에 대한 적응, 경쟁, 상호관계 강조</li> <li>• 조직은 네 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모두 가질 수 있으며 그 강도는 차이가 있음.</li> </ul>				

구분	관계지향문화(공동체형 문화)	혁신지향문화(유기체형 문화)	위계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시장형 문화)
	Clan(집단) 집단문화(clan)·합의문화(consensual)	Adhocacy 발전문화(development)	hierarchy(계층제) 위계문화(hierarchy culture)	Market(시장) 합리문화(rational culture)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내부과정모형	합리목표모형
특징	유연성·변화 / 내부지향	유연성·변화 / 외부지향	안정성·통제 / 내부지향	안정성·통제 / 외부지향
핵심속성	협력, 가족적 인간관계, 응집성	창의성, 기업가정신	통제, 명령, 규칙, 규제, 능률	경쟁, 목표달성, 시장점유율
리더	후견인(mentor), 촉진자, teambuilder	innovator, visionary, entrepreneur	monitor, coordinator, organizer	hard-driver, 경쟁자, 생산자
관리지향	의사소통, 인간적 배려, 협신	창의·혁신, 자율성, 지속적 변화	통제·조정, 능률성, 일관성·통합성	경쟁력, 생산성, 고객초점
조직형태	공동체, 가족	adhocracy	계층제, 관료제	시장조직

① 관계지향 문화 : 구성원의 신뢰, 팀워크를 통한 참여·충성·사기 등 중시. 조직 내 가족적 인간관계의 유지에 역점. 조직구성원의 단결, 협동, 공유가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등 중시. 개인의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조직구성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와 가족적 분위기 형성

② 혁신지향 문화 : 조직의 변화와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외부환경에의 적응능력에 중점. 외부환경에 대한 변화지향성과 신축적 대응성을 기반으로 조직구성원의 도전의식, 모험성, 창의성, 혁신성, 자원획득 등을 중시하며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율성과 자유 재량권 부여.

③ 위계지향 문화 : 공식적 명령과 규칙, 집권적 통제와 안정지향성을 강조하는 관료제의 가치와 규범을 반영. 위계질서에 의한 명령과 통제, 업무 처리 시 규칙과 법 준수, 관행, 안정, 문서와 형식, 보고와 정보관리, 명확한 책임소재 등을 강조하는 관료적 문화. 계층제적인 강력한 감독체계와 예측된 규범과 절차를 속성으로 하므로 안정성과 통제에 대한 필요성과 조직 내부적 유지와 통합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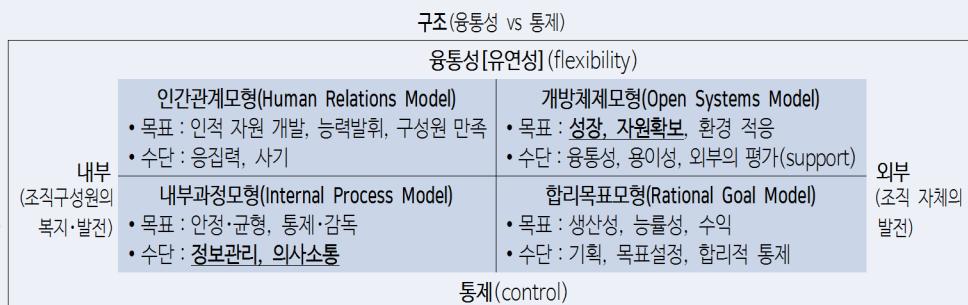
④ 과업지향 문화 :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을 통한 수행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강조. 목표달성, 계획, 능률성, 성과 보상의 가치를 강조. 외부지향성 관점에서 경쟁을, 성과통제의 관점에서 목표달성을 강조, 외부관계자와의 거래에 강조점을 두며, 경쟁력과 생산성이 핵심가치.

## [관련기술1]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경제9급

- ① 개방형 문화는 조직 성장과 자원 획득을 강조하는 반면, 내부과정형 문화는 정보관리와 의사소통을 강조 한다.
- ② 인간관계형 문화는 유연성과 내부 지향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합리목표형 문화는 통제와 외부 지향을 특징으로 한다.
- ③ 조직의 지향점과 구조를 조직 효과의 핵심으로 본다.
- ④ 조직은 상호 경쟁적인 조직문화 유형을 모두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해설



- ④ (x) 조직은 상호 경쟁적인 조직문화 유형을 모두 가질 수 있으며 그 강도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답 ④

## [관련기술2]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7급(인사·조직론)

- ① 조직에서 종합적인 효과성 평가모형으로 사용된다.
- ② 조직이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조직구조가 통제(안정)와 유연(융통성) 중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조직문화 유형을 구분한다.
- ③ 경쟁가치모형 중에서 합리목표모형은 혁신지향 문화와 관계가 있다.
- ④ 경쟁가치모형에 따르면 경합적 가치는 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라 중요도가 변한다.

### 해설

- ③ (x) 경쟁가치모형 중에서 합리목표모형은 과업지향 문화와 관계가 있다. 개방체제모형이 혁신지향문화와 관계가 있다.

답 ③

## 11

### 평정상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연쇄적 착오(halo error)란 모호한 상황에 관해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 데서 범하는 착오이다.
- ② 일관적 착오(systematic error)란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다른 평정자보다 높거나 낮아 다른 평정자들보다 항상 박한 점수를 주거나, 후한 점수를 줄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 ③ 유사성의 착오(stereotyping)란 평정자가 자신의 고정 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정보를 고정관념에 부합되도록 왜곡시킬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 ④ 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란 평정자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들이 속한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비추어 지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오이다.
- ⑤ 이기적 착오(self-serving bias)란 타인의 실패·성공을 평가할 때 상황적 요인은 과소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은 과대평가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발생하는 착오이다.

## 해설

① (x)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의 오류에 대한 내용이다.

<b>연쇄효과(헤일로 효과 ; halo effect, 후광·현혹효과)</b>	어느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전반적인 인상으로 작용하여 부분적 특징만으로 전체를 평가하거나,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일반적 인상이 모든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하나의 장점이 모든 것을 좋게 평가하게 하거나 하나의 단점이 모든 것은 나쁘게 평가).
--	---

### 선택적 지각 (selective perception)

- ① **지각적 탐색(perceptual vigilance)** : 자신의 의견·태도·신념에 일치하고 유리하면 지각이 더 잘 됨. 예) 칵테일파티효과(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자신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는 잘 듣는 현상)
- ② **지각적 방어(방어적 지각 perceptual defense)** : 자신의 습성이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그것을 자기의 고정관념에 부합하도록 왜곡시키는 것. 유형화의 착오나 투사도 이에 해당.

③ (x) 지각적 방어(방어적 지각 perceptual defense)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similarity error를 유사성(類似性) 착오로 stereotyping을 유형화(類型化)로 번역한다. 유사성 착오(similarity error)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향으로, 평정자가 자기와 유사한 성향의 피평정자에게 후한 평점을 주는 것이다(예) 근면한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근면할 경우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높게 평정). 유형화(類型化 : stereotyping) 또는 상동적 오류는 평정요소와 관계가 없는 요소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고정관념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피평정자에 대해 그가 속한 사회집단이나 고정관념에 비추어 부정확하게 평정되는 현상이다. 유형화는 지각적 방어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

④ (x) 유형화(類型化), 상동적(相同的)오류, 고정관념·선입견·편견(stereotyping, personal bias)에 대한 내용이다.

⑤ (x)

<b>이기적[자존적] 편견[착오] [자기고양적 귀인 편향] (self - serving bias)</b>	자신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내재적 요인(자신의 능력·노력 등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외재적 요인(상황 요인)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 일종의 자기 합리화로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성공에 대한 개인적 공로만 강조.
<b>근본적 귀인[귀속]의 착오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b>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외재적 요인(상황 요인)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행위자의 성격·동기·태도·능력·신념 등 내재적 요인(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이기적 착오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의 오류이고 근본적 귀속의 착오는 타인에 대한 평가에서의 오류로서 서로 다른 개념이다.

\* **주의** : 근본적 귀속의 착오에 대해 일부 수험자들에서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은 낮게 평가하며, 타인의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낮게 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려는 성향”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근본적 귀속의 착오는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외재적·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내재적·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다.(위키피디아 사이트의 원문 설명 : In social psychology,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FAE), also known as correspondence bias or attribution effect, is the tendency for people to under-emphasize situational explanations for an individual's observed behavior while over-emphasizing dispositional and personality-based explanations for their behavior.)

답 ②

## ▣ 근무성적평정상 오류(오차·착오)

<b>연쇄효과(헤일로 효과 halo effect, 후광·현혹 효과)</b>	<b>의의</b> 어느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전반적인 인상으로 작용하여 부분적 특징만으로 전체를 평가하거나,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일반적 인상이 모든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하나의 장점이 모든 것을 좋게 평가하게 하거나 하나의 단점이 모든 것은 나쁘게 평가). * 과거기록집착착오 : 연쇄적 착오의 일종으로 과거에 받은 평정과 같은 평정하는 경향
<b>분포상의 오류</b>	<b>방지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강제선택법이나 프로브스트법(평정요소 간 연상효과 배제)</li> <li>⑧ 각 평정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순차적으로 평정(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피평정자 전원을 평가한 후 다음 요소를 평가)</li> <li>⑨ 평정요소별 배열순서에 유의(평정요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요소의 배치를 멀리 떨어지게 함)</li> <li>⑩ 평정척도를 만들 때 등급을 서로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li> </ul>
<b>체계적·규칙적·일관적 오류(systematic or constant error)</b>	<b>유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중화 경향(중심화 경향) 평정자가 모든 피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중간수준의 점수나 가치를 주는 심리적 경향. 평정상 의문이 있거나 피평정자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 모험을 피하려는 방편으로 모든 것이 평균이라는 평정을 하게 됨.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거나 평정에 자신이 없을 때 책임회피 수단으로 발생.</li> <li>관대화 경향 하급자와의 불편한 인간관계를 의식하여 평정결과 분포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쪽에 집중됨(실제보다 높게 평가).</li> <li>엄격화 경향 평정결과 분포가 열등한 쪽에 집중(실제수준보다 낮게 평가)</li> </ul>
<b>총계적·총합적·총체적 오류(total error)</b>	<b>방지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강제배분법(강제할당법)·서열법 사용</li> <li>⑧ 집중화 방지를 위해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사용</li> <li>⑨ 평정요소의 중요성이 평정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중간을 택할 수 없는 체크리스트법 활용</li> </ul>
<b>논리적 오차(logical erro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평정자의 가치관 및 평정기준의 차이에 의하여 늘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발생하는 오차로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주거나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이는 평정자가 가진 평정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됨. 예) A 평정자는 항상 좋게 평정, B 평정자는 항상 나쁘게 평정.</li> <li>② 평가 목적이 감시 목적일 경우에는 낮게 평가되기 쉽고, 관리 목적일 경우에는 높게 평가되기 쉬움.</li> <li>③ 강제배분법은 일관적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li> </ul>
<b>논리적 오차(logical error)</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 각 피평정자들의 점수와 평균점수 간 차이의 종합이 크며(표준편차·분산이 큼)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불규칙하게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li> <li>② 체계적(일관적) 착오는 평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사후에 조정 가능, 총계적 착오는 평정기준이 너무 불규칙해서 사후에 조정 곤란</li> </ul>

시간적 오류	유형	⑤ 근접(근시성·최근성·막바지)효과(recency·proximity error) : 오래된 실적보다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경향.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시점에 가까운 실적이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현상. ㉡ 최초(초두·첫머리)효과(primacy effect) : 근접오차와 반대로 첫인상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데서 오는 오류.
	방지 방안	MBO식 평정, 중요사건기록법, 평가센타법, 행태관찰평정도법 활용 - 결과로 나타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목표관리제나 중요사건기록 법을 사용하거나, 평가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평가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정
유형화(類型化) 상동적(相同的)오류 고정관념·선입견·편견 (stereotyping, personal bias)		① 평정요소와 관계가 없는 요소 등에 대해 평정자가 갖고 있는 편견·고정관념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② 피평정자에 대해 그가 속한 사회집단이나 고정관념에 비추어 부정확하게 평정되는 현상. 피평정자들이 같은 부류라고 판단하는 오류이므로 상동적 오류라 함(예) 기획실 직원이므로 기획력이 뛰어나다고 평정, 동사무소 직원이므로 업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평정, 서울대 출신이면 책임감이 높을 것이라는 평정). 방어적 지각의 착오도 유형화의 착오의 일종. ③ 집단을 통해 평가자를 간접 평정하는 점에서 평정자를 직접 평정하는 다른 오류와 차이가 있음.
유사성(類似性) 오류 (similarity error)		평정자가 자기자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향으로, 평정자가 자기와 유사한 성향의 피평정자에게 후한 평점을 주는 것(예) 근면한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근면할 경우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높게 평정)
대비[대조] 오류 (contrast error)		평정자가 바로 직전의 평정대상자(동일 평가요소에서 점수가 더 높거나 낮은 사람)와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차(예)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을 평정한 평정자는 다음 사람을 실제보다 우수하게 평가)
선택적 지각 (selective perception)	자신의 관심사, 배경, 경험, 태도를 바탕으로 사물을 선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모호한 상황에 관해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는 데서 범하는 오류.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정보만 받아들이고 일부 정보는 간과하는 것	
	지각적 탐색 (perceptual vigilance)	자신의 의견·태도·신념에 일치하고 유리하면 지각이 더 잘 됨. 예) 카테일파티효과(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자신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는 잘 듣는 현상)
투사(주관의 객관화) (projection)	자신의 습성이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그것을 자기의 고정관념에 부합하도록 왜곡시키는 것. 유형화의 착오나 투사도 이에 해당.	
이기적[자존적] 편견 [자기고양적 귀인 편향] (self - serving bias)	자신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내재적 요인(자신의 능력·노력 등 개인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외재적 요인(상황 요인)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 일종의 자기 합리화로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성공에 대한 개인적 공로만 강조.	
근본적 귀인의 착오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외재적 요인(상황 요인)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행위자의 성격·동기·태도·능력·신념 등 내재적 요인(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self - fulfilling prophecy], 로젠탈효과)	누군가에 대한 타인의 믿음이나 기대, 예측이 그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 즉,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상대방은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면서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유사한 의미인 로젠탈 효과나 자기실현적 [자기충족적] 예언은 기대와 동일선상에서 지각하려는 경향으로 사람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대가 그 기대를 성취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예) 기대치가 높을 때 높은 업무성과를 보이고 기대치가 낮을 때 낮은 업무 성과를 보이는 경향	
기대성 착오 (expectancy error)	사람이나 사실 또는 사건의 발생에 관해 미리 어떤 기대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지각하는데서 오는 오차. 즉 자신이 기대하는 데로 지각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남.	
해바라기효과 (sunflower effect)	관리자가 최고관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유능함을 나타내기 위해 부하직원에 대한 평정을 사실과는 달리 후하게 평정. 자기가 지휘·감독하는 직원은 모두가 훌륭하며 따라서 평정도 좋다는 인식.	

## 1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7명의 의견이 다음과 같다. 「공무원징계령」에 따를 때 결정된 징계 종류는? 2020 국회8급

- |             |             |             |             |
|-------------|-------------|-------------|-------------|
| • 위원 A : 파면 | • 위원 B : 감봉 | • 위원 C : 강등 | • 위원 D : 해임 |
| • 위원 E : 정직 | • 위원 F : 해임 | • 위원 G : 파면 |             |

① 파면      ② 해임      ③ 정직      ④ 강등      ⑤ 감봉

### 해설

• 공무원징계령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견)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협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시된 내용을 출석의원이 7명의 의견으로 보면 과반수는 4명 이상이며,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해 갈 경우 해임에서 의견 수 누계 4명이 되므로 해임으로 결정하게 된다.(징계 유형을 불리한 것부터 나열하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건책)

징계 의견	의견 수	의견 수 누계
파면	2	2
해임	2	4
강등	1	5
정직	1	6
감봉	1	7

답 ②

## 13 「인사혁신처 예규」 상 탄력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0 국회8급

- ① 재택근무형      ② 시차출퇴근형      ③ 재량근무형      ④ 근무시간 선택형      ⑤ 집약근무형

## 해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유연근무제(변형근무제) 중 근무시간과 관련된 탄력근무제(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 자율 조정)에는 시차출퇴근형(flex-time work), 근무시간선택형(alternative work schedule), 집약근무형(compressed work), 재량근무형(discretionary work)이 있다. 근무장소와 관련된 원격근무제(고정된 근무장소에서 벗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근무)의 유형으로 재택근무형(at-home work)과 스마트워크 근무형이 있다.

☞ ①

## ※ 유연근무제(변형근무제) -출처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83호(2020.01.20.)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일과 삶의 균형 : work-life balance)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근무시간·근무장소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근무 형태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part-time work)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 ~ 35시간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지정(최대사용기간 제한은 없음)</li> <li>• 적용범위 : 모든 공무원은 직종(정무직은 제외)과 직위·계급 및 직무분야 등에 제한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 가능</li> <li>• 신청시기 : 수시로 가능</li> <li>• 보수 및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li> </ul>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 자율 조정.		
근무 시간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형(flex-time work)	1일 8시간 근무	출근시간 자율 조정(매일 같은 출근시간 또는 요일별 다른 출근 시간) <sup>*주1)</sup>
		근무시간선택형(alternative work schedule)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일 4~12시간 근무	1주 5일 근무 준수 <sup>*주2)</sup>
		집약근무형(compressed work)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일 4~12시간 근무	1주 3.5 ~ 4일 근무
근무 장소	원격근무제	재량근무형(discretionary work)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근무 인정.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	
		고정된 근무장소에서 벗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근무		
		재택근무형 (at-home work)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으며 정액지급분은 지급 가능	
		스마트워크 근무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나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 주1) 시차출퇴근형은 기관·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해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도록 함이 원칙

\* 주2) 근무시간선택형은 업무협조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게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해 이 시간에는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이 원칙

\* 주3) 집약근무형 1일 근무시간은 종전 '1일 10~12시간'에서 '1일 4~12시간'으로 변경됨

## 14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이며, 공무원 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 공무원연금제도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④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6년까지이다.  
 ⑤ 퇴직수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분담한다.

## 해설

- ① (O) 공무원연금법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을 설립한다.  
 ② (O)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두며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  
 ③④ (O) 기여금(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  
 ⑤ 납부 기간 :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함. 단, 기여금 납부기간 36년 초과자는 내지 않음.  
 ⑥ 기여금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9%)에 상당하는 금액(기여율은 7%에서 2016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1.6배)을 초과할 수 없음.  
 ⑦ (X) 퇴직급여 재원은 공무원과 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지만, 퇴직수당의 재원은 정부가 단독으로 부담한다(퇴직수당은 연금이 아님).

■ 공무원연금법 상 연금급여의 종류

단기급여	공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우금
장기급여	퇴직연금
	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폐직·과원, 60세 미만 정년규정, 계급정년으로 퇴직 시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지급) ※ 지급개시연령은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받음 ② 퇴직연금 금액 : 재직기간 매 1년당(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12년으로 계산)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만분의 17,000(1.7%) 상당 금액(지급률은 1.9%에서 2016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단 퇴직연금 산정시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퇴직수당
장해급여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지급. 소요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
유족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1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시),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참고로 2018.9. 법 개정으로 구법의 적용 대상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됨을 알아두어야 한다.

☞ ⑤

## 15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단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나 그 연합단체도 허용하고 있다.
- ④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다.
- ⑤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해설

- ① (x) 노동조합장·지부장 등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專任者)는 인정된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장관(지방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는 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며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면 안 된다.
- ② (o)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②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o) 공무원노조 설립 최소단위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다.  
└ 최소 설립단위 2개 이상을 포함하는 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 설립 가능(※ 강원도·경기도공무원노조, 강원도공무원노조와 경기도공무원노조의 연합단체)  
└ 최소 설립단위에서 복수노조도 허용(※ 경기도 공무원노조가 2개 이상 설립될 수도 있음)
- ④ (o) ■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협약 사항(법 제8조, 동법 시행령 4조)

단체교섭·협약 가능 사항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단체교섭·협약 불가 사항 (시행령 제4조)	법령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 ①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②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③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④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⑤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⑥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 ⑤ (o) 일반직 공무원은 6급 이하만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이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가입 가능	①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②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③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가입 불가능	위 가입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음 공무원은 가입 불가. ①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①

## 16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본예산 혹은 당초예산이라고 한다.
- ②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 ③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 ④ 적자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해외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 ⑤ 수정예산은 예상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 해설

- ③ (O) 잠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의 유효 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준예산은 일단 집행되고 난 후에 본예산이 성립되면 집행금액은 당연히 본예산에 흡수되어 본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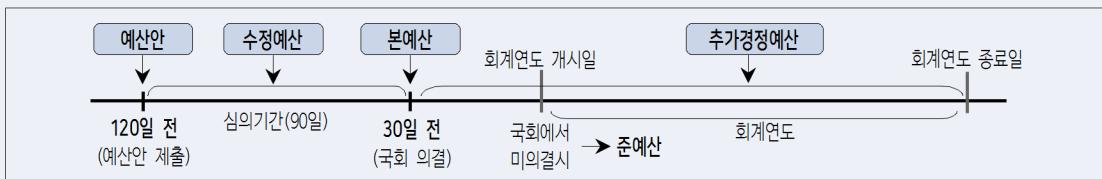
### ■ 예산 불성립시 예산제도(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때 활용되는 예산제도)

종 류	사용기간	의회 의결	지출항목	채택국가	우리나라
준예산	제한 없음	불필요	한정적	독일, 우리나라	2 공화국 때부터(1960~) 채택, 국가예산에 사용된 적 없음. 지방정부예산에서는 사용된 적 있음
가예산	최초 1개월	필요	전반적	프랑스 3·4공화국	1 공화국 때(1948~1960) 채택. 사용된 적 있음
잠정예산	제한 없음(주로 의회 의결시 정함)	필요	전반적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채택한 적 없음

- ⑤ (X)

- 수정예산 :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 의결 전, 국회의 예산심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 제출하는 예산(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필요) - 예산 성립 전 예산안 변경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에 수정하는 수정예산과 다름).

### ■ 예산의 성립시기(예산절차)에 따른 분류 : 본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이고 수정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예산 확정 전 즉 의회 심의 중에 수정하여 제출되는 예산이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확정 후에 추가로 편성하여 제출되는 예산이다.



답 ⑤

## 17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2009년 이전까지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기금, 교육 특별회계 까지 모두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된다.
- ② 통합재정수지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예산운용의 신축성이 제고되었다.
- ③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는 제외된다.
- ④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영역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정부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해설

- ① (X) 통합재정수지에 지방재정 부문이 포함된 것은 2004년부터임. 우리나라로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통합재정예산을 도입해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공표, 2004년부터는 지방정부부문까지 포함하여 편성.

### ■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비금융 공공부문 (순수정부활동)	일반정부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일부 기금, 세입세출외(세계잉여금, 전대차관 등)	통합 재정에 포함됨
	지방정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비금융 공공부문 (정부기금)	비금융 공기업	중앙정부	기업특별회계(5개) 우편·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특별회계(정부기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지방정부	공기업특별회계		

공공기관 및 금융 공공부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회계	통합 재정에 포함 안 됨
	공금용 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금융성 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국가장학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중앙은행	한국은행	

- ② (X) 통합재정은 실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기금 등 정부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표시함으로써 재정이 국민소득·통화·국제수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분류체계이다. 따라서 예산운용의 신축성과는 거리가 멀다.

- ③ (×) 통합재정수지 계산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은 포함되고 외국환평형기금과 금융성기금은 제외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수치를 관리재정수지라 한다(사회보장성기금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 통합예산은 정부의 실제활동영역별 예산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법정예산이나 집행용 예산이 아니라 정부전체의 월별 재정수지를 알려주는 단순한 재정통계이다.
- ⑤ (○) 우리나라의 법정예산은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으로 구분되고 중앙정부예산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중앙정부 소속의 각종 기금은 예산 외로 처리되어 국가 전체의 총체적 재정활동 규모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정부 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활동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국민들이 예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통합하여 총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통합예산의 작성이 필요하다

답 ⑤

## 18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 내용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20 국회8급

- ①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되었다.
- ②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각 부처는 소관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①, ④      ② ①, ②      ③ ②, ③      ④ ②, ④      ⑤ ②, ③

### 해설

- ① (○) 국가(중앙정부) 예산에 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7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8년에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cf) 주민참여예산 : ①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가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 ②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여 2006.1.부터 자율적 시행 ⇒ ③ 2011.9.부터 의무적 시행 ⇒ ④ 2018.3.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에 대한 주민참여로 확대하여 예산편성과정 뿐 아니라 사업집행 평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⑤ (○) 국민참여예산 운영 절차 중 사업제안·숙성단계(1월~5월)에 대한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접수된 국민 제안사업을 부처별로 분류하여 해당 부처로 송부하고, 부처는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한다.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특정 지역 또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은 별도로 분류되어 참여예산 후보사업에서 제외된다.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민간전문가,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에서 각 부처의 적격성 점검 내용을 확정한다. 이후 국민제안 숙성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의 제안이 개략적 아이디어만 담고 있을 경우 각 부처는 사업기간, 사업규모(물량, 단가 등) 등을 구체화하여 예산사업으로 숙성시킨다.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는 각 부처의 사업숙성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하게 되며, 이후 각 부처는 숙성과정을 거친 국민제안 사업을 예산요구안에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 ■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숙성 절차(1월~5월)

국민 사업 제안	• 온라인 {홈페이지(mybudget.go.kr), e메일·우편으로 예산사업 제안}
적격성 점검	① 기획재정부는 접수된 국민제안사업을 분류하여 소관 부처로 송부 ② 각 부처는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 실시 예비타당성조사 등 선행절차 필요사업, 법 개정 선행 필요사업, 특정 지역단체 지원사업 등은 참여예산 후보사업에서 제외 적격성 검토시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민간전문가와의 협업 적극 실시 ③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민간전문가,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에서 각 부처의 적격성 점검 내용 확정
국민제안 숙성	① 각 부처는 적격성 점검을 통과한 국민제안을 숙성하여 예산사업화 예산요구 양식에 맞춰 사업기간, 사업규모(물량, 단가 등) 등 산정. 사업 숙성시 지원협의회 민간전문가와의 협업 적극 실시. ② 예산사업화 과정에서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예산실 소관과)와 협의 * 협의 내용 : 기준 사업과의 중복 여부, 과거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인지 여부, 지원물량·단가의 적정여부 등 ③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사업숙성 내용 확정
예산 요구	• 각 부처는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확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b>부처별 지출한도와 별도로 요구</b> )

- ⑥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 한다x).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⑦ (×) • 지방재정법 제39조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은 앞으로도 출제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내용을 덧붙이니 참조 바람.

답 ①

## 2020년 국회직 8급 행정학

▣ 국민참여예산제											
의의	<p>국민이 국가(중앙정부)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2018년도 예산 편성에 시범도입을 거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p> <p>※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제안·심사가 이루어져 국가재정에 대한 사업제안은 제외되었으나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국민제안도 가능하게 되어 제안 범위가 확대됨.</p>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제4호 :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li>■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부는 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u>시행하여야 한다</u>.</li> <li>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u>반영할 수 있다</u>(반영하여야 한다 x).</li> <li>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li> <li>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li> </ul> </li>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획재정부장관은 참여예산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x) - 국민이 제안한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로 사업선후도가 조사되어 재정정책자문위 논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뿐 따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음.</li> </ul>										
일정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width: 30%;"> <b>사업제안 · 속성(1월~5월)</b>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사업제안 : 온라인(홈페이지, e메일)·오프라인(우편)으로 예산사업 제안</li> <li>•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 속성(3월~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민간전문가,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는 적격성 점검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 속성 후 각 부처의 사업속성 내용 확정.</li> </ul> </li> <li>•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5.31) – 제안사업 속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안 요구</li> </ul> </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b>참여단 논의(6~7월)</b>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국민참여단 발족</li> <li>• 예산국민참여단 숙의 – 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li> </ul> </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b>선후도 조사(7월)</b>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국민참여단선후도 조사</li> <li>• 일반국민선후도 조사</li> </ul> </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b>정부예산안 반영(8월)</b>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예산실) 예산 심의</li> <li>•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논의</li> </ul> </td></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b>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9~12월)</b>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 확정</li> <li>•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li> </ul> </td></tr> </table>	<b>사업제안 · 속성(1월~5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사업제안 : 온라인(홈페이지, e메일)·오프라인(우편)으로 예산사업 제안</li> <li>•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 속성(3월~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민간전문가,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는 적격성 점검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 속성 후 각 부처의 사업속성 내용 확정.</li> </ul> </li> <li>•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5.31) – 제안사업 속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안 요구</li> </ul>	<b>참여단 논의(6~7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국민참여단 발족</li> <li>• 예산국민참여단 숙의 – 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li> </ul>	<b>선후도 조사(7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국민참여단선후도 조사</li> <li>• 일반국민선후도 조사</li> </ul>	<b>정부예산안 반영(8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예산실) 예산 심의</li> <li>•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논의</li> </ul>	<b>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9~12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 확정</li> <li>•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li> </ul>
<b>사업제안 · 속성(1월~5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사업제안 : 온라인(홈페이지, e메일)·오프라인(우편)으로 예산사업 제안</li> <li>•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및 사업 속성(3월~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민간전문가,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는 적격성 점검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 속성 후 각 부처의 사업속성 내용 확정.</li> </ul> </li> <li>•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5.31) – 제안사업 속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안 요구</li> </ul>										
<b>참여단 논의(6~7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국민참여단 발족</li> <li>• 예산국민참여단 숙의 – 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li> </ul>										
<b>선후도 조사(7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국민참여단선후도 조사</li> <li>• 일반국민선후도 조사</li> </ul>										
<b>정부예산안 반영(8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예산실) 예산 심의</li> <li>•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논의</li> </ul>										
<b>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9~12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 확정</li> <li>•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li> </ul>										

▣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법령 규정	
지방 재정법	<p>제39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시행할 수 있다 x).</p> <p>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두어야 한다 x).</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실시하여야 한다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근거</li> <li>• 의무적 시행</li> <li>• 주민참여예산기구 (임의적)</li> <li>• 의견수렴 및 의견서 예산안 첨부(필요적)</li> <li>• 행안부장관이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임의적)</li> </ul>
지방 재정법 시행령 (2020. 4.30. 시행)	<p>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p> <p>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청회 또는 간담회</li> <li>2. 설문조사</li> <li>3. 사업공모</li> <li>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li> </ol>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반영해야 한다x).</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 한다x).</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li> <li>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li> <li>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li> <li>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통령령x)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방법 제시(조례로도 정할 수 있음)</li> <li>• 수렴된 주민의견 반영 (임의적)</li> <li>• 행안부장관의 제도운영 평가는 매년 실시 가능</li> <li>• 범위·의견수렴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li> </ul>

## 19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국회사무총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국회사무총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 특례지출 예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⑤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 해설

- ① (O)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① 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② (O)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③ (X) 국가재정법 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O)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
|---|--|
|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
|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
|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 9. 성인지 예산서   |
|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
|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
|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12. 삭제   |
|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
| 5의2. 완성이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
|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
|   |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

- ⑤ (O)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 ■ 출납정리기한과 출납기한

출납기한	2월 10일까지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완결기한
출납정리기한	원 칙 회계연도 말일 예 외 1월 20일까지	세입금의 수납 및 지출금의 지출·지급 기한

답 ③

## 20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예산 재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난구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③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 복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 ④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완성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것이다.
- ⑤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 해설

- ① (x) 예산 배정 :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  
예산 재배정 :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산하 재무관(부속기관·하급기관)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다시 예산을 배정하는 것.
- ② (x) •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 ④ (x) • 동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  |   |
|--|---|
|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7.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 2. 문화재 복원사업  |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
|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
|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 시설               |   |
- ⑥ (○) • 동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⑦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⑧ (x)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 ⑨ ①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채권자명·채무자 명·상환 또는 회수계획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 ④

## 21

##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국회사무총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회입법조사처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자정부기본계획에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전자정부의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국회예산처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 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 민원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냈을 때에만,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⑤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정보의 수집·기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 해설

- ① (○)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권자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국회 사무총장.  
•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2조 4.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현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현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 ② (○)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현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16

2020년 국회직 8급 행정학

③ (○)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b>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b> 4. 전자적 행정관리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7. 정보자원의 통합·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8.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9.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b>성과 관리</b> <b>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b> <b>11. 전자정부의 국제협력</b> 12.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 제8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는 민원인이 행정기관등에 미리 해당 민원사항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행정기관등이 발급기관에 수수료를 송금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냈을 때에만 할 수 있다.			
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답 ⑤

## 22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임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 ②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는 기관위임사무이다.
- ③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수임주체가 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 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해설

- ① (×)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위임한 기관(국가)이 전액 부담(교부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②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에 예시된 사무유형들이다.
- ③⑤ (×) 법령에 의해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집행기관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관여하지 못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위임기관이 갖는다.
- ④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 포함)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답 ④

## 23 정부 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라이트(Wright)의 이론 중 중첩권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을 말하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 ② 던사이어(Dunsire)의 이론 중 하향식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을 말한다.
- ③ 엘코크(Elcock)의 이론 중 동반자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 및 지원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 ④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이론 중 갈등-합의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을 말한다.
- ⑤ 무라마츠 미치오(村松岐夫)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경쟁모형으로 나눈다.

## 해설

③ (x) 엘코크의 이론 중 대리인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 엘코크(H. 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 영국의 중앙·지방관계를 연구한 단일국가 유형(unitary system)의 이념형(ideal type)적 관계모형.

동반자 모형(partnership)	지방정부가 고유한 권능을 가지고 독자적 결정을 내리므로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동반자의 관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공동서비스 공급에 동일한 파트너가 되며, 정책집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헌법에서 보장받고, 자원동원과 정책집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
대리인 모형(agent)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대리인(일선관계)으로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 지방정부의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한정.
교환 모형(exchange ; 절충모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의존관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재원을 상호교환.

## ■ 학자별 정부 간 관계 모형

구분	독립·경쟁·대등(자율)	종속·의존(통제)	절충(자율+통제) 또는 상호의존
라이트(D. Wright)	분리[동등]권위형·독립형	포괄권위형·내포형	중첩권위형·상호의존형(이상적 형태로 봄)
엘콕(H. Elock)	동반자 모형(partnership)	대리인 모형(agent)	교환모형
던사이어(A. Dunsire)	지방자치 모형(local authority)	하향식 모형(top - down)	정치체제 모형(political system)
라조아(A. Lajoie)	정치적 분권	행정권 위임	행정적 분권
챈들러(J. Chandler)	동반자 모형	대리인 모형	소작인 모형, 상호의존모형
월다브스키(A. Wildavsky)	갈등 - 합의 모형	협조 - 강제 모형	
무라마츠 미치오(村松岐夫)	수평적 정치경쟁모형	수직적 행정통제 모형	상호의존모형
나이스(D. Nice)	경쟁모형		상호의존모형
로즈(R. Rhodes)			권력의존모형(전략적 협상모형)

답 ③

## 2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 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⑤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사무 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된다.

## 해설

① (x) 위탁 ⇒ 위임

## ■ 사무위탁과 사무위임

구분	의미	지방자치법 규정
사무 위탁	소관 사무 일부를 다른 (동급 또는 하급)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위탁	•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u>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u>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u>위탁할 수 있다.</u>
	사무 위임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u>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u>

## ■ 권한의 이양·이관·위임

이양(移譲)·이관(移管)	권한의 책임소관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	권한 전부를 넘김 ⇨ 이양한 측은 감독책임 없음
위임(委任) ↓	하급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대한 <u>하향적 위임</u>	권한 일부만 위임 ⇨ 위임자의 감독책임 있음
위탁(委託) ↔	동일 수준의 행정기관·민간단체에 대한 <u>수평적 위탁</u>	권한 일부만 위탁 ⇨ 위탁자의 감독책임 있음

- ② (O)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O) 동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 ④ (O) 동법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⑤ (O)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격을 갖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므로 조합의 사무처리효과는 당연히 당해 조합에 귀속된다.

##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행정협의회

구분	방식	법인격	사무처리 효과의 귀속	협력의 효과
지방자치단체조합	새로운 법인을 설립	법인격 있음	조합에 귀속	협력 효과 더 큼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관 설립	법인격 없음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협력 효과 더 작음

답 ①

## 25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국회8급

-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해설

이하 지방재정법 규정

- ① (O)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O)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③ (X) 교부금 ⇨ 보조금
  -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부담금
-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 교부금

### cf) 국고보조금의 유형

유형	내용	사무구분	보조정도
협의의 보조금	국가의 정책상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필요	자치사무	필요한 상당액
부담금	국가와 지방의 상호이해관계	단체위임사무	일부 또는 전액(공동부담)
교부금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위임	기관위임사무	전액(국가가 부담)

- ④ (O)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O)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바로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는 없고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인건비 미지급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자력 극복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지문으로 보면 옳음.
-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황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7급 준비생이나 지방자치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더 자세히 알아두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덧붙이니 참조 바람.

답 ③

## 2020년 국회직 8급 행정학

▣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재정분석, 재정위험수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li> <li>• 행안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재정분석), 재정 상황 중 채무 등에 대하여 재정위험 수준 점검</li> <li>•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 가능</li> </ul>						
↓							
재정진단	실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li> <li>㉡ 재정위험수준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li> </ul>						
	절차						
조치	행안부장관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장관은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가능</li> <li> ☑ 재정진단 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다.(x) - 수립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함.</li> </ul>						
↓							
재정주의단체 재정위기단체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안부장관이 재정분석·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구분에 따라 지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위기단체 :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li> <li>━ 재정주의단체 :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지 않지만 재정 건전성·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li> </ul> </li> </ul>						
통제	•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재정건전화계획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계획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행안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을 권고·지도 가능),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li> <li> ② 지방채 발행 등 제한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행안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⑦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나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음.</li> <li> ③ 재재 : 행안부장관은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면 교부세 감액이나 재정상 불이익 부여 가능</li> </ul>						
.....							
긴급 재정관리단체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이 닉칠 경우, 주민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						
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p style="text-align: center;"><b>〈재정위기 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지만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재정위험 수준이 지정시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li> <li>② 소속 공무원 인건비 30일 이상 미지급</li> <li>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상환 60일 이상 불이행</li> </ul> </td><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p style="text-align: center;">⇒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행안부장관이 판단</p> </td><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p style="text-align: center;">⇒ 행안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 가능(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고 재정위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p> </td></tr> <tr> <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td><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p style="text-align: center;">⇒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자축 사유나 이에 준하는 재정위기시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p> </td><td style="padding: 5px; vertical-align: top;"> <p style="text-align: center;">⇒ 행안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 가능(지방재정위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p> </td></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b>〈재정위기 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지만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재정위험 수준이 지정시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li> <li>② 소속 공무원 인건비 30일 이상 미지급</li> <li>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상환 60일 이상 불이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행안부장관이 판단</p>	<p style="text-align: center;">⇒ 행안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 가능(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고 재정위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자축 사유나 이에 준하는 재정위기시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p>	<p style="text-align: center;">⇒ 행안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 가능(지방재정위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b>〈재정위기 상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지만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재정위험 수준이 지정시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li> <li>② 소속 공무원 인건비 30일 이상 미지급</li> <li>③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상환 60일 이상 불이행</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행안부장관이 판단</p>	<p style="text-align: center;">⇒ 행안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 가능(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고 재정위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자축 사유나 이에 준하는 재정위기시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p>	<p style="text-align: center;">⇒ 행안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 단체로 지정 가능(지방재정위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긴급재정관리인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li> <li> ② 긴급재정관리계획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부적절시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채무 상환 및 감축, 세출구조조정, 수입 증대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안 편성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함. 행정안전부장관은 계획 이행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의 권고 가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li> <li> ③ 지방채 발행 등 제한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⑦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나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음.</li> <li> ④ 재재 : 행안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계획 수립·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면 교부세 감액이나 재정상의 불이익 부여 가능</li> </ul>							